

수신자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 단체장 (경유)

제목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법률홈닥터'」사업 이용안내

- 1. 사회복지현장에서 애쓰시는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 2. 저희 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점으로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가. 사업기간 : 2013. 4. 15 ~ 연중
 - 나. 사업내용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법률상담·교육,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등) 제공

- 다. 이용대상 : 개인, 사회복지시설 · 단체(이용자 상담, 법률 강연 등)
- 라. 이용방법
 - 1) 시설·단체 : 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후 저희 협의회로 팩스접수(F.702-3383)
 - 2) 개인 : 전화로 상담 신청 및 상담일정 협의(변호사 직통전화 T.702-3782) (※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실은 5월중 오픈 예정입니다.)
- 마. 이용시간 : 매주 월~목요일, 10:00~17:00(변호사와 협의할 경우 조정가능)
- 바. 문의 : 정 광 영 변호사(T.702-3782)
- 붙임 1.「법률홈닥터」 시설 · 단체 방문상담 신청서 서식 1부.
 - 2.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문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Section Section 19	國否團	
9	团营营	ĒЛ
	包围挖	
		51

변호	사	76	라	o	복지사	업부장 -	DUK!	×	상근부회장	전결 🥏	25at	-
협조	자											
八	행	제사합	혈2013	- 337 (2013.	4. 11)	접	수		()
우 6	8-008	28	제주특별	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112-1	/ www	.jejubokji.n	net		
전회	(06	4)702	2-3784	전송	(064)7	02-3383	/ jej	ubokji	@empal.com	/ 공기	H	

법률홈닥터 시설·단체 방문상담 신청서

시설(단체)명									전 화	
주 <i>2</i>	소	(우)							팩 스	
담당직원		성명) 직위)								
희망일시			년	월	일	۸I	~	۸I		
					세	부	사	항		
서비스 형태		I는 곳에 강연 (원천 법률상담	하는 강연			명)			ŀ 사, 형사 등	⇒
주 이용대상	(주	이용대상	의 연령/	'직업/성	상황을	간단하기	∥ 서술)			
비고										
신청시설 (단체) 준비사항	2)	인터넷 이 이용자 대 필기구		등한 컴	퓨터를	를 갖춘 성	상담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시설(단체) 대표 성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법률복지의 새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 자격자가 서민들에게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와 전국 2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법률 홈닥터 정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 1.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 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개인 상담 및 기관 단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2.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 대상자 수요에 맞춘 생활법률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법령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교육 등
- 3. 기타 :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시군구청 및 복지기관 사례회의에서의 법률자문,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1. 사회복지시설 · 단체 : 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후 저희 협의회로 팩스접수(F.702-3383)
- 2. 개인: 전화로 상담 신청 및 상담일정 협의(정광영 변호사 직통전화 T.702-3782) (※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실은 5월중 오픈 예정입니다.)